

윤락 상대자 처벌 크게강화

보사부 법개정안 마련

84.7.7
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져
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윤락여성
들의 직업보도시설(또는 여자기술
원) 강제수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
마련되고 사실상 사문화돼온 윤락
행위자 및 상대자, 윤락업소 업주
들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.

보사부가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
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내놓은 윤
락행위방지법 개정시안에 따르면
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
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또는 선고
유예 판결을 할 때에는 동시에 1
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도보호
처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.

개정시안은 20살 미만의 초범자
와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에
대해서는 지방선도위원회의 심사
를 거쳐 시·도지사가 10개월 범위
안에서 보호시설에 입소조처할 수
있게 했다. 또 윤락행위자와 그
상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
행 3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
과료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의
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
처하도록 했다. 진재학 기자